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지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9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16193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시·도지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3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93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21.
3.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시·도지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u>자율주행자동차</u>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 ----- ----- ----- -----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 ----- ---. ----- ----- --.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
-----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
-----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⑦ ----- 제6항-----

---.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AI),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하여 실증 환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²⁾ 여객의 유상운송에 대한 특례, 화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

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여객의 유상운송에 대한 특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 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³⁾의

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 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 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이동 2024.1.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특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4)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며,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이동 2017.3.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는 폐기물 수거차, 서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조향장치 등 안전기준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한편, 시범운행지구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총 55곳이 지정되었는데, 2020년 12월에 최초로 지정되어 2025년 12월 11차까지 지정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12, 서울 9, 인천 4, 제주 4, 부산 3, 대구 2곳 등임(참고1 참조).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됨⁵⁾.

-
-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 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 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시·도지사에게 관할 구역 내 시범운행지구의 직접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시범운행지구 조성의 적시성 확보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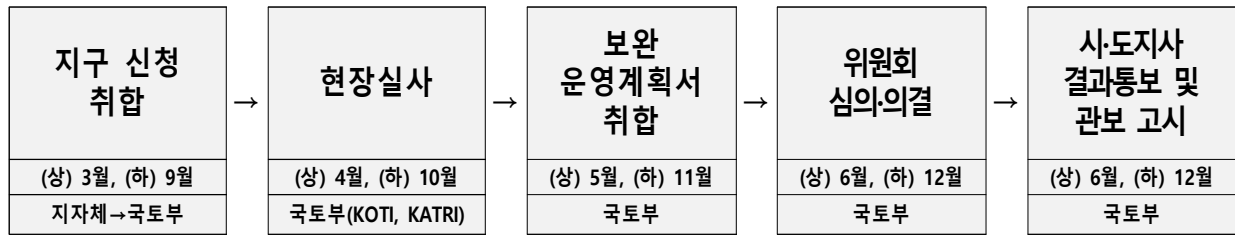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부터 관보 고시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연 2회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 추가로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지정이 어려울 수 있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시·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범운행지구를 적시에 조성하여 신속한 실증 환경 구축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 맞춤형 시범운행지구 조성이 용이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환경, 교통 상황 등이 상이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만 가능한 실정임.

이러한 시범운행지구 지정 방식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조성을 어렵게 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에 맞는 실증에 제한적일 수 있음.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통 환경, 산업 수요 등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시범운행지구의 신속한 조성과 지역 맞춤형 실증 환경 조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공기관 및 업계 또한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부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시범운행지구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되는 구역이므로, 주민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 의견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실증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시·도지사 지정 시, 지역 여건과 준비 수준을 반영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및 상용화 확산 기반 마련이 가능함.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규 교통수단 정착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범운행지구 총괄 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기술발전 및 승객 수요에 따른 운행영역 신속 확대가 가능해져 기업 요구에 신속한 대응으로 상용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KOTI): 지방정부 및 기업 수요 중심의 지구 운영

시 제도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자율주행 운송 산업이 진흥될 것임.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지방정부 지정 시 의회의 예산승인 문제6)가 해결되어 적시 예산 투입과 신속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할 것임.

□ 업계(자율주행 분야 기업)

SWM: 시·도지사 지정 권한 확대는 지역별 교통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증을 가능하게 하므로 타당한 방향임.

SUM: 지방정부의 지정 시, 중앙정부의 심의 과정을 기다리는 시간적 비용이 줄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런칭 가능함.

라이드플렉스: 개정 시 지방정부의 필요성(서비스 시점,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문 의 처

02)6788-5575

6) 지방정부는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신규 지정 신청, 의회는 지구 지정 완료 후 예산 승인 → 예산 확보가 늦어 신규 지정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미운영 또는 평가 미흡 사례 다수
※ 2023년 하반기 신규 지정 10개소 중 '24년 서비스 미운영(E등급) 지구 5개소('24년 성과평가)

참고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전국 17개 시·도에 총 55곳의 지구 지정

연번	지구(지자체)		지구 범위	최초 지정시기
1	서울	상암	· 서울 상암동 일원(6.6Kkm ²)	'20.12(1차)
2	서울	강남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km ²)	'22.6(3차)
3	서울	청계천	· 종로구 청계천 일원(10.2km)	'22.6(3차)
4	서울	청와대	· 서울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23.6(5차)
5	서울	대중교통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도봉~온수 등(97km)	'23.6(5차)
6	서울	생활권	·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일원(15.02km)	'24.12(8차)
7	부산	오시리아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5.05km)	'22.11(4차)
8	부산	내성-중동BRT	·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일원(10.4km)	'25.7(10차)
9	부산	에코델타시티	·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원(5.0km)	'25.12(11차)
10	대구	산단-서대구역	· 국가산단-서대구역 등(19.3km ² , 40.8km)	'20.12(1차)
11	대구	동성로	· 대구 중구 일원(4.55km)	'23.11(6차)
12	인천	구월	· 인천시청 일원(4.24km)	'23.11(6차)
13	인천	송도	·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23.11(6차)
14	인천	영종	· 영종 운서역 ~ 하늘도시 일원(9.7km)	'23.11(6차)
15	인천	국제공항	· 국제공항 일원(27.0km)	'23.11(6차)
16	광주	평동산단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km ² , 14.2km)	'20.12(1차)
17	울산	테크노산단	·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1.8km)	'23.11(6차)
18	울산	우정혁신도시	· 울산 우정혁신도시 일원(20.3km)	'25.12(11차)
19	세종	상상지구	· BRT 노선(22.9km), 1~4생활권(27.12km ²)	'20.12(1차)
20	경기	판교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1.34km ² , 2.69km)	'21.4(2차)
21	경기	시흥	· 배곧동, 정왕동 일원(9.5km)	'22.6(3차)
22	경기	안양	· 안양시 일원(12.4km)	'23.11(6차)
23	경기	수원광교	· 수원시 광교1동 일원(6.6km)	'24.12(8차)
24	경기	화성 리빙랩	· 서부권 일원(36.13km ² +46.5km)	'24.12(8차)
25	경기	용인동백	·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km)	'24.12(8차)
26	경기	고양	· 경기 고양시 킨텍스, 대화역 일원(28.97km)	'25.7(10차)
27	경기	파주	· 파주 운정신도시 일원(23.3km)	'25.12(11차)

연번	지구(지자체)		지구 범위	최초 지정시기
28	경기	안산	· 안산시 초지동, 사동 일원(11km)	'25.12(11차)
29	경기	광명	· 광명시 일원(12km)	'25.12(11차)
30	경기	성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18.5km)	'25.12(11차)
31	경기	양주	· 양주 옥정신도시 일원(10.4km)	'25.12(11차)
32	강원	강릉	· 강릉시 일원(58.0km)	'22.6(3차)
33	강원	강릉 화물운송	· 강릉시 회산동 일원(10.5km)	'25.7(10차)
34	강원	횡성	· 강원 횡성군 둔내면 일원(25.2km)	'25.7(10차)
35	강원	춘천	· 춘천시 일원(6.5km)	'25.12(11차)
36	충청권	충북·세종·대전	· 충북↔세종↔대전 BRT노선(113km)	'20.12(1차)
37	충북	혁신도시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23.6(5차)
38	충남	내포신도시	· 내포신도시 일원(21.6km)	'23.6(5차)
39	충남	당진	· 당진 시내 일원(7.3km)	'24.6(7차)
40	충남	천안	· 천안아산KTX역 일원(26.5km)	'24.12(8차)
41	전북	군산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2.8km², 41.6km)	'22.6(3차)
42	전북	익산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22.11(4차)
43	전북	광역운송망	· 전라북도 군산시-전주시 일원(61.3km)	'24.6(7차)
44	전남	순천	· 순천역~국가정원(9.8km)	'22.6(3차)
45	전남	해남	· 해남군 산이로 일원(8.2km)	'23.11(6차)
46	전남	목포	· 전남 목포시 일원(24.0km)	'25.12(11차)
47	경북	도청신도시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11.5km)	'23.6(5차)
48	경북	경주	·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12.85km)	'23.11(6차)
49	경남	하동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23.6(5차)
50	경남	사천	· 사천시 일원(7.3km)	'23.11(6차)
51	제주	시청-서귀포	· 제주시청~서귀포제1청사 등(2.23km², 69.8km)	'20.12(1차)
52	제주	첨단과기단지	· 제주시 첨단로 일원(13.2km)	'23.6(5차)
53	제주	성산일출봉	· 제주 성산일출봉 일원(6.9km)	'25.7(10차)
54	제주	제주 스마트물류	· 제주 조천읍·회천동 일원(15.7km)	'25.7(10차)
55	고속도로(직권지정)		· 경부선 등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등(5,381.4km)	'24.12(8차)

□ 시범운행지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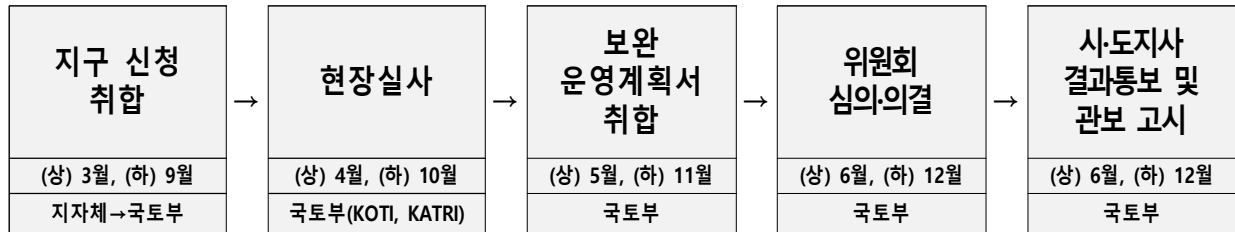
-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
- 법적 근거는 자율차법 제7조('20.5 시행)로 **'20.11** 첫 지정 후 총 11차례 지정하였으며 '25.12월기준 **17개 시·도 총 55곳**의 지구 지정

□ 주요 특례

- (유상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제81조)의 예외를 허용
 - * 수요응답형 셔틀, 일반 셔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유상 여객운송사업 가능
- (화물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제3조)의 예외를 허용
- (안전기준 특례)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 부여
 -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고속도 40km/h 미만인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지정·관리) 지자체 신청* →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민간위원장) 심의 (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
- * 자율자동차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직권지정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 (지정기준) 시범운영지구 내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방안, 여객·화물 운송사업계획 등 배점표(국토부 고시)에 따라 평가